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37
----------	------

2025.9.8.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8. 29.(금) 박철수 의원

나. 회부일: 2025. 8. 29.(금)

다. 상정일: 2025. 9. 8.(월)

-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5조)
-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방향 (안 제6조~제7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 예산확보 및 지원, 포상, 시행규칙 (안 제9조~제11조)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로 특색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어린이 참여 활동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후 조성된 어린이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 붙임 1.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37-1
----------	--------

제안년월일 : 2025. 9. 8.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 이유

- 조례안 자문을 현실성 있게 자구 일부수정

2. 수정 내용

- 안 제7조제4항제1호 중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을 “참여”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3항제3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를 “읍·면·동장이” 로 수정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제1호 중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을 “참여”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3항제3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를 “읍·면·동장이” 로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관리 방향)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구성·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어린이, 부모,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구성·관리 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u>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u></p> <p>2. ~ 4. (생략)</p> <p>5. <u>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u></p>	<p>제7조(구성·관리 방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참여</u></p> <p>2.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p> <p>1.·2. (생략)</p> <p>3. <u>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u></p>	<p>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읍·면·동장이</u> -----</p>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
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4. ~ 9. (생략)

④ ~ ⑦ (생략)

--

4.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및 시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위생·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대상지 선정 계획
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계획
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성·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참여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놀이터를 개선 또는 정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2. 업무 담당 공무원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4.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디자인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7. 조정 분야 전문가

8. 광양시에 거주하는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9.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